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정 관

제 정 : 2001. 02. 22
1 차 개 정 : 2002. 03. 21
2 차 개 정 : 2002. 06. 28
3 차 개 정 : 2003. 03. 28
4 차 개 정 : 2003. 06. 20
5 차 개 정 : 2003. 11. 20
6 차 개 정 : 2004. 02. 27
7 차 개 정 : 2004. 09. 16
8 차 전문개정 : 2005. 01. 01
9 차 개 정 : 2005. 06. 27
10 차 전문개정 : 2005. 09. 27
11 차 개 정 : 2006. 03. 10
12 차 개 정 : 2009. 03. 13
13 차 개 정 : 2011. 03. 11
14 차 개 정 : 2012. 03. 16
15 차 개 정 : 2015. 03. 20
16 차 개 정 : 2017. 03. 17
17 차 개 정 : 2018. 03. 16
18 차 개 정 : 2019. 03. 14
19 차 개 정 : 2020. 03. 19

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GLOVIS Co., Ltd 라고 표기한다. (약호 GLOVIS)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2. 화물운송주선업
3. 물류센터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4. 화물포장업
5. 항공 및 육·해상 화물 취급업 및 관련 서비스업
6. 공동 및 복합물류사업
7. 물류장비 및 용기의 제작, 임대, 운영 및 관련서비스업
8.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9. 운송장비 임대업
10. 택배사업
11. 물류교육사업
12. 물류 컨설팅사업
13.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14. 보험 중개 및 대리점업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
16. 자동차 수리업
17. 중고차 매매업 및 폐차업
18.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판매대행업
19.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등 부제품의 판매업
20.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21. 재활용 환경사업
22. 토목, 건축 및 건설업
23. 물류관련 출판업
24. 물류관련 디지털 영상업
25. 위탁판매업
26. 자재 및 부품 구매대행업
27. 기계설비 설치 공사업
28. 우편 및 소포 송달업
29. 항만하역업
30. 해상운송업
31.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2. 방청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3. 목재포장 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34. 기계 및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업
35. 중고차 경매업
36. 자동차 등록 대행업

- 37. 시설물 유지 관리업
- 38. 카탈로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 39. 창고업
- 40. 방청저리가공업
- 4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판매업
- 42. 주차장 운영업
- 43. 기타 전문 도매업
- 44.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 45.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 46.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47. 선박관리업
- 48. 포장시험·연구·서비스업
- 49. 온라인 중고차 거래 관련 일체의 사업
- 50. 전기차 및 관련 충전 인프라 운영, 관제서비스업
- 51.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
- 52. 위험물 저장 및 운반업
- 53. 기타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정,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glovis.net)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50,600 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기업공개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일반공모 종자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종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약증서 발행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예약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부품 제공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 할 수 있다.
- ④ 제②항 각 호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의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의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명의개서등)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의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삭제)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날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3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5 조(소집통지, 공고, 총회의 진행)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국문 및 영문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의 진행은 국어 및 영어로 하고, 외국인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중 1 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정족수와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19 조(총회의 질서유지)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국문 및 영문으로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및 이 사 회

제 21 조(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상법 542 조의 8 의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 조의 2(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1 조의 2(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제 22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3 명 이상 9 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 23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 24 조(이사의 해임과 결원)

-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 385 조에 따른다.
-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②-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②-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②-3 금지선 또는 한정지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 ②-4 사망 시

제 25 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6 조(이사의 임무)

-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27 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② 상여금, 성과급 등 기타적려금은 사업실적 및 이익증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지급규모, 방법, 시기등을 정하여 지급한다.
- ③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이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 30 조(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31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1.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당초의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동의
 2. 미화 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차입, 미화 1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또는 보증의 제공
 3. 회사의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거나, 사후승인을 전제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함)
 4. 미화 1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소송의 개시, 합의 또는 취하
 5. 미화 5 십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용계약 또는 자문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외부감사의 선임 및 해임
 7. 회계방식의 변경
 8. 이사회 또는 기타 중요한 회사의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투자
 10. 연간 이익 배당안의 작성
 1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합병
 13.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4. 정관의 변경
 15.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본 제 31 조 제①항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 월 30 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2 조(이사회회의 소집,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국문 및 영문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울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회의 진행은 국어 및 영어로 하고, 외국인 주주에게는 이사회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2 조의 2(특별결의사항)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결의는 재적 이사 8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 소속의 비운송회사에 대한 증권투자를 제외하고, 미화 1 천 5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영업 또는 (선박이나 운송리스를 포함)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2. 신주의 발행, 전환 또는 교환 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 또는 전환 사채, 교환사채의 인수권 또는 매입 선택권의 부여
3. 미화 1 천 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또는 미화 1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보증 또는 면책의 제공
4. 미화 1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5.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계약이나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물류계약(운송서비스계약 포함)을 제외하고 미화 1 천 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동의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취득 또는 처분. 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자회사 또는 계열사는 제외
8.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한 사항
9. 상기 1 내지 8 항에 규정된 거래유형들을 제외하고 미화 1 천 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또는 기타 지출
10.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분 또는 총당과 관련한 준비금의 설정
11. 합병
12.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3. 정관의 변경
14.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본 제 32 조의 2 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 월 30 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 33 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제 34 조(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 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제 35 조(의안)

이사회는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는 의사의 관하여는 국문 및 영문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경영진)

-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고문 등)

-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이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제 40 조(감사위원회의 임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와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감사위원의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2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1 대차대조표

①-2 손익계산서

①-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 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이익의 배당)

- ①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단,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제③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제 1 조(내 규)**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2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시행일자)

본 개정 정관은 제 19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1 항, 제 13 조의 2 및 제 13 조의 3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정관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1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